교원양성과정 운영규정<개정2017.12.14.>

제정 2001. 10. 01	개정 2009. 03. 01	개정 2013. 08. 19
개정 2002. 03. 01	개정 2011. 04. 01	개정 2017. 12. 14
개정 2007. 06. 01	개정 2013. 04. 01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 규칙」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교원양성과정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6.1., 2009.3.1., 2013.8.19., 2017.12.14.>

제2조(교원자격종별 및 관련학과) ① 교원자격종별에 따른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12.14.>

1. 보건교사(2급) : 간호학과 <개정 2007.6.1., 2017.12.14.>
2. 유치원정교사(2급) : 유아교육과
3. 실기교사 : 교육부로부터 표시과목 결정 승인을 받은 학과 <개정 2013.8.19.>

② 교원양성과정의 신설·변동·폐지시행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8.19., 2017.12.14.>

제3조(이수대상자) 교원양성과정 이수대상자는 제2조에 규정된 학과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교육부의 교원양성과정 승인결과에 따라 이수대상 인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7.12.14.>

제4조(과목이수) ①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소정의 전공 및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1., 2017.12.14.>

1. <삭제 2007.6.1.>
2. <삭제 2007.6.1.>
3. <삭제 2007.6.1.>

② <삭제 2007.6.1.>

제5조(과목개설)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은 반드시 정규교과목으로 개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4.>

제6조(이수신청) ① 교원양성과정 운영학과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는 1학년 2학기 종강일까지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4.>

1. <개정 2007.6.1.><삭제 2017.12.14.>
2. <삭제 2017.12.14.>

② 실기교사 과정은 별도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 <개정 2017.12.14.>

제7조(이수예정자 선발) ① 교원양성과정 이수신청자 중 교육부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교원양성과정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1., 2013.8.19., 2017.12.14.>

② 교직이수예정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17.12.14.>

1. 보건교사(2급) : 교직 인적성 검사(적격, 부적격), 구술면접(Pass, Fail), 1학년 평점평균 성적순 <신설 2017.12.14.>
2. 유치원정교사(2급) : 정원내 및 정원외 입학자 중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 <신설 2017.12.14.>

제8조(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) ① 소정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졸업 및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」에 따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

야 한다. <개정 2011.4.1., 2013.8.19., 2017.12.14.>
1. <개정 2007.6.1.> <삭제 2017.12.14.>
2. <삭제 2017.12.14.>
3. <삭제 2017.12.14.>
②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제10조에서 이동 2017.12.14.>
1. 졸업예정자 : 졸업학기 종강일까지 <개정 2017.12.14.>
2. 졸업자 : 수시 <개정 2017.12.14.>

제9조(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)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」 및 교육부「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」에 따른다. <개정 2017.12.14.>
1. <개정 2007.6.1., 2011.4.1., 2013.4.1.><삭제 2017.12.14.>
2. <개정 2007.6.1., 2011.4.1., 2013.4.1.><삭제 2017.12.14.>
3. <개정 2007.6.1., 2013.4.1.><삭제 2017.12.14.>
4. <신설 2013.4.1., 2013.8.19.><삭제 2017.12.14.>
5. <신설 2013.8.19.><삭제 2017.12.14.>

제10조(교원자격증 신청기간) ① <제8조 ②항으로 이동 2017.12.14.>
② <제8조 ②항으로 이동 2017.12.14.>

제11조(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)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. <개정 2011.4.1., 2013.8.19., 2017.12.14.>
1.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<개정 2017.12.14.>
2. <삭제 2017.12.14.>
3. 관련 공적증빙(주민등록초본 등) <개정 2017.12.14.>

제12조(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) 교원자격증의 분실·훼손으로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증명 발급 담당부서에 제출한다. <개정 2011.4.1., 2013.8.19., 2017.12.14.>

제13조(교원양성위원회) 「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항」에 의거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4.1., 2017.12.14.>
① <개정 2011.4.1., 2013.8.19.><삭제 2017.12.14.>
② <삭제 2017.12.14.>
③ <삭제 2017.12.14.>
1. <삭제 2017.12.14.>
2. <신설 2011.4.1.><삭제 2017.12.14.>
3. <개정 2011.4.1.><삭제 2017.12.14.>
④ <신설 2011.4.1.><삭제 2017.12.14.>

제14조(기타) 교원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절차, 관련 제 양식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교육부 「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」에 따른다. 다만, 교원자격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예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07.6.1., 2017.12.14.>

부칙

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교원자격증 발급기준에 대한 경과 조치) 교직 적성·인성검사는 2013년 이전 입학자(복학자 포함)에 대하여는 3년제 이상 교육과정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, 2년제의 경우 적격판정 1회 이상 취득을 권장사항으로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교직 적성·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점수표
※모든 영역에서 기준점수 이상 취득 시, 적격판정

하위검사영역 구분	만점	기준점수	하위검사영역 구분	만점	기준점수
01.문제해결력/탐구력	36	16	08.공감/포용력	36	18
02.판단력	36	17	09.지식/정보력	36	17
03.독립성/자주성	36	17	10.봉사/희생/협동성	36	16
04.창의/응용력	36	17	11.계획성	36	16
05.심리적 안정성	36	13	12.성실/책임감	36	16
06.언어/의사소통능력	36	17	13.소명감/교직감	36	17
07.지도성	36	18	14.열정	36	14